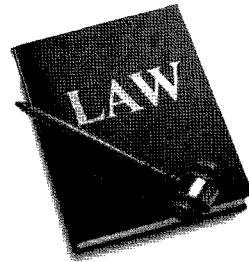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11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4. 16
기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제 ·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과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하였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598-1(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598-1(등기구-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을 개정하여 추가
-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5(이중 캡 형광램프)를 개정하여 추가
-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199(단일 캡 형광램프)를 개정하여 추가

3. 의견제출 및 문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9. 5. 15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 제 · 개정 안전기준 리스트 >

번호	기준번호	기준명	내용	대응국제규격	비고
1	K60598-1	등기구-제1부 : 일반요구 사항 및 시험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범위 조정 및 문구 명확	IEC 60598-1	개정
2	K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범위 조정 및 형상 범위 확대	IEC 61195	개정
3	K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적용범위 조정	IEC 61199	개정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11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1
기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발암물질인 석면을 전기용품의 구성 부품이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요구사항) 중 2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22.22의 내용 중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침을 실시한 석면으로 먼지나 석면섬유에 따른 먼지가 주위 공기 중에 부유하기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를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 ② 22.22의 주석인 “이 항의 취지는 석면섬유 또는 먼지의 흡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를 삭제한다.

3. 의견제출 및 문의

제 ·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9. 5. 11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22.22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 <u>하지 않아야 한다.</u> 다만, 함침을 실시 <u>한 석면으로 먼지나 석면 섬유에 따른</u> <u>먼지가 주위 공기 중에 부유하지 않도록</u> <u>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u> <u>에 따르지 않는다.</u></p> <p>적합여부는 육안검사에 의하여 판정한다.</p> <p>주 - 이 항의 취지는 <u>석면섬유 또는 먼지의 흡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u> <u>방지하는 것이다.</u></p>	<p>22.22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 <u>하지 않아야 한다.</u></p> <p>적합여부는 육안검사에 의하여 판정한다.</p>